

2023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전라북도 내 50인 이하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·공정 개선을 위하여 『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-혁신기반 공정개선』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2월 6일

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제품 생산성 및 품질 향상, 원가절감, 노동환경(조건) 개선 등을 위한 생산 공정개선으로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

□ 사업명 :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- 혁신기반 공정개선

□ 사업기간 : `23. 2월 ~ 11월(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)

□ 사업예산 : 1,600백만원

□ 지원대상 : 도내 소재¹⁾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²⁾

1) 생산공장이 전북에 소재한 기업

2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'별표3' 업종별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

□ 지원규모 : 40개 기업(기업당 최대 50백만원, 자부담 20% 별도)

□ 지원내용 :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개선 비용 지원

□ 사업구조 : [Track 1] 기업단독형, [Track 2] 산·학·연 협업형 과제

2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

□ 지원유형

- [Track 1] 기업단독형, [Track 2] 산·학·연 협업형 내에서 자율 신청

구 분	대분류	지원내용	컨소시엄 구성
[Track 1] 기업 단독형	기 초	- (현장 멘토링) 공정최적화 분석, 공정 진단·설계, 기술애로 해결, 로드맵 수립 - (공정개선) 불량률 감소, 원가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공정개선	- 기업 단독 신청 후, 진흥원 멘토 POOL 내에서 담임멘토 매칭 ※ 멘토 1:1 매칭 필수
[Track 2] 산·학·연 협업형	고도화	- 기존 공정의 고도화 및 자동화 공정 구축 수준 향상을 위해 산·학·연 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정혁신 지원	- 산·학·연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

* 세부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

□ 지원내용

-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**공정개선 비용** 지원(과제당 최대 50백만원)
- 아래의 **공정개선 유형**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과제

- (공정자동화)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통해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 도모
- (공정효율형) 불필요하거나 반복·중복되는 단계를 축소·병합 또는 일괄공정 등 공정 프로세스 개선으로 생산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
- (품질개선형) 공정기술을 개선하여 제품의 불량률 감소 및 성능·품질 향상 등 품질관리 기반 구축

* 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(지원분야에 미적합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
- 생산 제품 신뢰성 확보(성능 및 품질 향상, 불량률 관리 등) 또는 효율성 증대(리드타임 단축, 재고비용 절감 등)를 위한 공정개선
- 특히, 기존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매출 신장 및 시장 점유율을 제고 할 수 있는 과제 우대
- 단순 오류 해결 및 경미한 수정,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·설치 등은 공정개선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3 추진체계 및 지원금액

□ 추진체계

- 참여기업 :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 수행
- 협업기관 : 참여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, 연구기관, 기업지원 단체(비영리 단체 限)
- 과제멘토 : 산업현장교수,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기업진단을 통한 공정개선 전략 및 로드맵 수립, 성과확산 지원

□ 지원금액 : 최대 5천만원(총 사업비의 80%이내 지원)

[혁신기반 공정개선 사업비 구성 예시]

(단위 : 천원)

총 사업비 (A+B)	도비 지원금 (A, 80%)	민간부담금(B, 20%)			비고
		계(100%)	현금(5%)	현물(15%)	
62,500	50,000	12,500	3,125	9,375	민간부담금 최소부담비율 적용
50,000	40,000	10,000	2,500	7,500	
37,500	30,000	7,500	1,875	5,625	

○ 도비지원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

※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

- (도비지원금) 총 사업비의 80% 이내, 5천만원 이내 지원
- (민간부담금) 총 사업비의 20% 이상*, 부가세 기업 별도 부담

* 민간부담금(20%) = 현금 5% 이상 + 현물 15% 이하

4

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

□ 사업비 편성기준

구분		사업비 계상 및 집행 기준	
유형	세목		
[Track 1] 기업 단독형	멘토링	○ 1:1 담임멘토링 수당 - 최소 2,800천원	• 멘토링 100천원 × 28시간(1일 4시간, 7회) * 멘토링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과제당 담임멘토 1:1현장멘토링 최소 7회(1일 최대 4시간) 진행
	직접비	○ 연구시설·장비 및 재료비, 연구활동비, 회의비, 기타 운영비 등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	• (별첨)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요령 내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고
[Track 2] 산학연 협업형	인건비	○ 인건비 (과제 참여연구자)	• 총 사업비의 10% 이내
	직접비	○ 연구시설·장비 및 재료비(시약 및 재료 구입경비, 시험분석료 등)	• 공정개선 과제 관련 기기·장비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비용 * 연구시설·장비의 경우 공정개선 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함
		○ 연구과제 추진비(여비, 사무용품비, 회의비 등)	• 도비지원금의 5% 이내
		○ 연구활동비(공공요금, 전문가활용비, 기술정보 수집비, 기술도입비 등)	• 도비지원금의 10% 이내 * 회계정산 수수료는 총 사업비의 1% 산정
	간접비	○ 연구수당(참여연구자)	• 인건비의 10% 이내
간접비	○ 간접비(인력,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)	• 도비지원금의 5% 이내	

- ※ 사업 운영요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협약체결 시 사업비 편성·집행기준 일부 변경 가능
- ※ 공정개선 과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하며,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
- ※ 통상적으로 관련업계 또는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비용을 단가로 산정하되,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책정된 비용이 과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정할 수 있음
- ※ 작성된 사업비 소요예산 내역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재작성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□ [Track1] 기업단독형 멘토링 운영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

구 분	세 목	편성기준
멘토링 운영비	멘 토 활동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시간당 10만원(1일 최소 2시간, 최대 4시간) * 기업당 현장멘토링 최소 7회, 멘토당 1일 최대 2회의 현장멘토링에 대해 수당지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업 필요 시 담임멘토와 논의 후, 추가로 전문멘토 1명 지정 가능 		
여 비	멘 토 활동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비 2만원 정액지급, 식비 2만원 정액지급 * 숙박시 숙박비 5만원 이내 실비 지급 * 시외버스, 철도 이용시 교통비 실비 지급(단, 택시, 시내버스 제외) * 자가용 이용시 출장증빙(톨게이트 비용, 해당 지역에서의 본인명의 신용카드 지출영수증) 후, 고속버스·철도 이용 등 대중교통 이용시 실비에 준하여 지급 * 멘토 1인당 1백만원 이내 편성

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. 13.(월) ~ 2. 24.(금) 17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*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○ 우 편 : [54843]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, 1층 자금기술팀

○ 이메일 : 7112051@naver.com 접수 후 확인 전화 요망 (T. 711-2051)

E-Mail 제출 시 유의사항	■ 신청서는 대표자 또는 법인 직인 날인 후, PDF 파일로 제출
	■ 파일명 : 기업명_공정개선 지원사업 신청서

□ 사업설명회

○ 행사일시 : 2. 9.(목) 15:00 ~ 16:00

○ 진행방법 : 온라인(사전신청, 유튜브 및 구루미 채널)

6

제출서류

연번	세부내용	자료	해당여부	
1	사업신청서	서식 1	공통 필수	
3	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과제정보 활용 동의서	서식 2		
4	지원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3		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	서식 4		
6	<TRACK 2> 협업기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서식 5		
7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붙임 ①		첨부 필수
8	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) 1부	붙임 ②		
9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붙임 ③		
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필수]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▶ [해당시]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장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(공고일 이전 공장등록 완료必) - 공장면적 500㎡ 미만 : 건축물관리대장(용도 : 공장/제조) -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: 임대차계약서 ※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” 또는 “제조업소”인 기업 	붙임 ④		
11	최근 3년간 매출증빙자료 ▶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)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(부가세 신고서 포함) 중 택1	붙임 ⑤		
12	상시근로자 확인자료(최근 신고분) ▶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	붙임 ⑥		
13	부속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정서 및 협력기관 협약서	붙임 ⑦	해당시	
14	해당 연구인력 학위증명서	붙임 ⑧	해당시	
15	우대가점 해당 확인서류	붙임 ⑨	해당시	

7

선정절차 및 평가항목



※ 평가·선정·협약 일정 및 절차 등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변경·조정 될 수 있음

① 모집공고 신청·접수

- 참여 희망기업은 본 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·접수

② 1차 요건평가

- 지원요건(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) 충족 여부 및 사업신청서 사전 검토

③ 2차 서면평가 <서류평가위원회>

-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현장평가 대상을 1.2배수 내외 선정
- 평가항목(안) : 제품·공정개선의 과제내용, 참여자격,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비 구성 적정성, 필요성 등 과제 적격성 평가

④ 3차 현장평가

- 현장방문(사무실, 공장 등)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, 기업환경 및 기술·경영 상태 확인 등

-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·제출 * 개별안내 예정
- 점검항목(안) : 사업참여 적격여부 확인(공장 보유 및 가동 여부 등), 기업 환경, 지원 필요성 등 과제 적합성 검토

⑤ 4차 대면평가 <선정심의위원회>

-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도비지원금 확정, 지원항목 조정 등 공정개선 지원대상 기업 선정
- 평가항목(안) : 제품·공정개선의 과제내용,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비 구성 적정성, 필요성, 기업성과(실적) 등 과제 적합성 평가

⑥ 최종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·접수 <선정심의위원회>
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,
 - 최종선정을 통해 확정된 최종 지원금액에 맞춰 운영요령에 의거한 비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업비 편성 등 사업계획서 재작성·보완하여 제출·접수
 -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지원금 관리통장(신용·체크·직불카드 발급)을 개설
- *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비(자부담금)에 포함하여 계상 가능(증빙서 제출)

⑦ 협약체결

- 도비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, 도비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민간부담금(현금) 입금 확인 후, 협약 체결
- *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
 - 이행보증보험증권, 지원금 지급신청서 미제출 및 자부담금(현금) 미입금 시 선정·지원 취소

구 분	보험금액	보험기간	비 고
이행보증보험증권	지원금 100%	협약기간+120일	

⑧ 사업비 지급 및 과제수행

- 1차 지원금 : 협약 체결 후,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70% 지급
- 2차 지원금 : 중간평가 시, “계속 지원”으로 평가될 경우 30% 지급

□ 심사단계별 평가항목

○ 서면평가

- 정량평가(50점)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업형태	제조업 여부	○ 전업을 50% 이상 : 10점 ○ 전업을 30% 이상 : 5점 ○ 전업을 20% 이하 : 2점	10점
	도내 소재	○ 본사 및 공장 도내 소재 : 10점 ○ 공장 도내 소재 : 5점	10점
신청기업 현황	사업 영위기간	○ 사업자등록증상 7년 이하 : 5점 ○ 사업자등록증상 8년 이상 : 3점	5점
	매출 규모	○ 2년 평균 매출 30억 이하 : 10점 ○ 2년 평균 매출 30억 이상 50억 이하 : 7점 ○ 2년 평균 매출 50억 이상 120억 이하 : 4점	10점
기술개발 준비성	연구개발 준비 및 지속성	○ 부설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존재 : 5점 ○ 연구인력 1명 이상(관련 분야 학사이상 학력) : 3점 ○ 연구 협력기관 존재(최근 3개년도 연구개발) : 2점	5점
우대가점 (해당 가점 1개 인정)		○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최초 참여기업 : 10점 ○ 도지사 표창 및 우리원 원장 상장 수여 우수기업 : 10점 ○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/ 수출유망중소기업 /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지정기업 / 여성기업 / 사회적기업 / 장애인기업 : 10점	10점
총 점(우대가점 포함)			50점

- 정성평가(60점)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지표	배점
혁신성	추진배경 및 지원필요성	○ 추진배경 및 공정개선 지원 필요성 : 10점 ○ 구축목표, 전략의 혁신성 및 도전성 : 10점	20점
적정성	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	○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: 5점 ○ 전략 방향의 적정성 및 체계성 : 5점 ○ 목표달성 가능성 : 5점 ○ 과제범위의 적합성 : 5점	20점
사업성	성장목표	○ 사업 이해도 : 10점 ○ CEO, 임원, 과제 담당자의 의지 : 5점	15점
기대효과		○ 기술적, 경제 산업적 기대효과 : 5점	5점
총 점(우대가점 포함)			60점

○ 대면평가

- 정량평가(50점)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업형태	제조업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업을 50% 이상 : 10점 ○ 전업을 30% 이상 : 5점 ○ 전업을 20% 이하 : 2점 	10점
	도내 소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사 및 공장 도내 소재 : 10점 ○ 공장 도내 소재 : 5점 	10점
신청기업 현황	사업 영위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등록증상 7년 이하 : 5점 ○ 사업자등록증상 8년 이상 : 3점 	5점
	매출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년 평균 매출 30억 이하 : 10점 ○ 2년 평균 매출 30억 이상 50억 이하 : 7점 ○ 2년 평균 매출 50억 이상 120억 이하 : 4점 	10점
기술개발 준비성	연구개발 준비 및 지속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설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존재 : 5점 ○ 연구인력 1명 이상(관련 분야 학사이상 학력) : 3점 ○ 연구 협력기관 존재(최근 3개년도 연구개발) : 2점 	5점
우대가점 (해당 가점 1개 인정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최초 참여기업 : 10점 ○ 도지사 표창 및 우리원 원장 상장 수여 우수기업 : 10점 ○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/ 수출유망중소기업 /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지정기업 / 여성기업 / 사회적기업 / 장애인기업 : 10점 	10점
총 점(우대가점 포함)			50점

- 정성평가(60점)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지표	배점
혁신성	추진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목표의 적정성 : 5점 ○ 과제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: 5점 ○ 최종 개발목표 수준의 정량적 측정 가능성 : 5점 	15점
	기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유형 간 연계의 적정성 : 5점 ○ 역할분담의 적정성, 지원 필요성 : 5점 	10점
사업성	경제적 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산성 향상, 고용창출 등 : 5점 ○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: 5점 	10점
기업 지원역량	[Track1] 사전기획 및 참여기업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장비 및 시설보유 및 사업 운영현황 : 5점 ○ 수행목표의 도전성 및 과제 방향의 적정성 : 5점 ○ 신청과제와 생산품과의 연관성, 관련 기자재 보유정도 : 5점 	15점
	[Track2] 사전기획 및 협업기관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업기관의 기업지원 수행 경험 : 5점 ○ 개발 인력의 확보,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: 5점 ○ 총괄책임자 ·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: 5점 	
사업비편성 (회계기관)	사업계획서, 예산항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비 편성 적합성(운영요령 준수 여부) : 5점 ○ 사업비 편성내용의 과제 목적 · 내용과의 적정성 : 5점 	10점
총 점			60점

□ 주요역할 및 과업 : 협업기관은 아래의 업무(①~⑤)를 수행

① 참여기업 공정개선 과제기획 지원

- 공정의 필요성, 세부 추진계획, 개발장비 성능지표, 기대효과 등 참여기업 공정개선 과제수행을 위한 체계적 계획서 작성
 - 참여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주요 성능지표의 객관적 지표설정 등 성장 고도화를 위한 사업계획 지원
 - 사업비 비목 및 계상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비 산정방법 제시
- * 연구시설·장비도입 및 연구과제추진 등에 필요한 타당한 사업비 Tool제시

② 수행과제의 연구개발 및 성과 증빙자료 작성·관리

- 참여기업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수행
- 연구개발 및 성과 증빙자료(연구노트, 지식재산권 등) 작성·관리

③ 과제수행 애로사항 지원

- 과제수행 과정에서 참여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애로 해결
 - 제품생산설비 자동화, 품질관리기반 구축 등 공정효율 증대를 위한 현장 멘토링 지원
 - 참여기업 현황조사, 자동화 공정 도입(시스템 정의, 품목관리, 공정·설비 현황 등), H/W, S/W 도입검토 등

④ 과제관리(사업비, 중간보고, 최종 결과보고 등) 지원

-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집행
-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사업비집행 및 증빙관리 지원으로 소기업이 과제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
 - 협약 후 1개월 이내 규정·지침 해석, 협약변경, 사업비 집행방법, 성과 목표관리 등 사업 전반적 멘토링 지원

- 현장 수시점검 등을 통해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최종평가 시 '실패과제' 판정률 최소화
 - 최종보고서 제출 1개월 이전에 평가결과 조치, 사업비 정산 등 지원
 - 과제개발 및 사업비 집행 실태를 중간점검하여 안정적인 과제 수행
 - (중간점검) 협약이후 1/2시점에 중간보고서 작성, 사업비 중간정산 지원
- ⑤ 기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한 업무
- 참여기업의 지원성과 측정, 우수사례 발굴
 - 참여기업 사업만족도 조사 및 분석,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

9 지원제외 사항

※ 협업기관 신청대상

- 협업기관 :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가능한 대학 및 연구기관
- 총괄책임자 :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대학은 대학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, 연구기관은 선임급 이상이 원칙(단, 계약기간이 정해진 자일 경우 과제완료 시점 3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)

□ 제한요건

- 연구상한제 적용 :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신청 과제 포함 총괄책임자 최대 3개,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로 제한
 -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기준 (기업지원서비스(비R&D)사업은 적용 제외)
 - * 협약기준 3개월 미만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사업은 포함하지 않음(4월 협약 예정)
-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

□ 참여기업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
-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□ 기 개발 /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, 상용화된 기계·장비구입이 목적인 경우
 - * 시중 판매되고 있는 완제품 구입 불가(직접설계/위탁생산 가능), 공정개선 설계/도면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
- 신청과제가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·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
- **참여횟수 제한** : 참여기업이 최근 5년 이내(`18~`22년)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동일 공정개선 세부사업을 3회 이상 진행한 경우
- 당해년도 내 본 사업 3개 세부사업 분야 중 동일분야 과제 중복 신청(지원) 불가
 - * 선정 후 중복신청(지원) 사실이 밝혀질 경우, 운영요령에 의거 협약 해지

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사업 참여자(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신청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-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 시에는 도비지원금 미지급
 - *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, 자부담금 입금 등 협약체결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

□ 참여제한 여부

- 대표자 및 과제 관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(또는 참여제한) 중인 경우
-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 - * 최종협약 이전에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○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'22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'22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'21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
- * 단, 아래의 ㉠부터 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

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
㉡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㉢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경우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창업 2년 미만 업체 예외)

[지원 가능여부 예시]

구 분	유동비율		부채비율		지원여부
	2021년	2022년	2021년	2022년	
A기업	49%	47%	300%	400%	X
B기업	55%	60%	550%	650%	X
C기업	20%	75%	600%	320%	O
D기업	100%	40%	400%	540%	O

10 문의처 및 유의사항

□ 문 의 처 :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☎ (063)711-2051

□ 유의사항 : 당해년도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선정 가능

○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중복 선정 불가(중복 신청은 가능)

-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(혁신기반 공정개선 / 기술가치평가 / 시험분석비용 및 품질인증획득)에 중복으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, 추후 각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 1개 지원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나머지 지원사업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됨

- 최근 5년 이내(`18년 ~ `22년)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동일 공정개선 세부과제는 3회限 신청 가능
- * 전년도 본 사업 참여기업이 기 지원받은 분야와 다른 세부사업은 지원 가능
-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참여기업과 협약체결 후, 사업비가 지급되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 도비지원금 지급은 2회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[별첨] 운영요령에 따름
- 제출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, 마감 이후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·착오 등이 있더라도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함
- 선정결과는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과제 신청자를 통해 통보함
- 사업 관련 서류는 비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
- 결격사유 발견 또는 지원 포기 시에는 차순위기업 선정함
-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
참 고 1

구비서류 발급처

구 분	서 류 명	발 급 처		
I 작성 서류	▶ <서식1>사업신청서 (5장 이내)	공고문 붙임 서식		
	▶ <서식2>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과제정보 활용 동의서			
	▶ <서식3>지원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		
	▶ <서식4>개인정보 수집·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			
	▶ <서식5> TRACK 2 협업기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		
II 사업자 확인	▶ 사업자등록증 (소재지 및 업태 확인, 도내 제조업 必)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		
III 소기업 확인	▶ 중소기업확인서 (소기업확인서) * 공고마감일 기준 기간유효 必 ('소기업' 명시 必)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)		
IV 채무 확인	▶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국세청 홈택스, 정부24		
V 제조업 확인	▶ [필수]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▶ [해당시]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- 공장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(공고일 이전 공장등록 완료必) - 공장면적 500㎡ 미만 : 건축물관리대장(용도 : 공장/제조) -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: 임대차계약서 ※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"공장" 또는 "제조업소"인 기업			
VI 소 기 업 확 인 서 류	① 매출액 ▲	택1	▶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(손익계산서 必)	국세청 홈택스
			▶ 최근 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세신고서	세무서 방문, 정부24, 국세청 홈택스
	② 상시 근로자 ▲	택1	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(개인사업자의 경우) ▶ 소득금액증명원	국세청 홈택스
			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▶ 4대보험 가입자명부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VII 해당시	▶ 부속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정서 및 협력기관 협약서			
VIII 해당시	▶ 해당 연구인력 학위증명서			
IX 해당시	▶ 우대가점 해당 확인서류			
협약시	▶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1부			
협약시	▶ 도비지원금 지급신청서(제출서류 포함)			

참 고 2
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

□ 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 제1항 관련)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	E(E36제외)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□ 공정자동화

- 개념 :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 및 전자장치를 통해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 도모
- 효과 : 공정자동화를 통해 노동환경(조건) 개선 및 생산량 증대, 예측생산 등 생산 경쟁력 강화

□ 공정효율형

- 개념 : 생산공정의 불필요하거나 반복/중복단계를 축소·병합 또는 일괄공정 등 공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공정효율 증대
- 효과 : 공정효율 개선을 통해 Lead Time 단축 및 재공품 감소 등 가공율 및 생산원가 감소

□ 품질개선형

- 개념 : 공정기술을 개선하여 제품의 불량률 감소 및 품질향상 등 품질 관리기반 구축
- 효과 : 불량률 감소를 통한 낭비 요소 제거 및 제조원가 절감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기반 마련